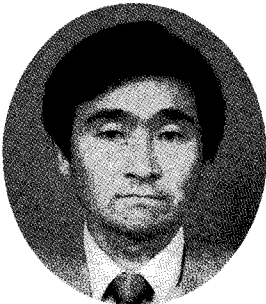


# 특집



조 홍 원  
본회 부회장

## 개정 낙진법 시행에 앞서 고려할 문제들

새로운 낙진법 - 이는 분명 우리 낙농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최소한의 낙농생존을 보증할 것이나 낙농궤멸을 가속화 할 것이나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실행전 남은 짧은기간 착실한 준비를 하여 착오없는 낙진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될 것이다.

말도 많고 시련도 많던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법이 수년전에 마련되어 새로운 체제와 질서로 착실히 준비하여 UR협상과 WTO가입의 수순을 밟았어야 옳은 일이었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만시지탄이 있다.

새로운 낙진법 - 이는 분명 우리 낙농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최소한의 낙농생존을 보증할 것이나 낙농궤멸을 가속화 할 것이나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이와도 봄같지 않다던가, 우리네 마음이 그렇다.

개정 낙진법이 전국낙농인의 십수년간 두고 두고 바라던 숙원사항이고 개정했으니 의당 쌍수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나 그렇지 못한 속내는 수년간 지지부진 끌고오는 동안 수차례의 수정과 가필로 본래의 의도가 상당 부분 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개정 낙진법으

로 시도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로서 낙농가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 낙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문제를 몽땅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99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질 대통령령이나 농림부령, 또는 낙농진흥위원회 구성과 정관에 낙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한 규범의 제정이 낙농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본인도 수십년간 낙농업에 종사한 중견 낙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낙진법의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1. 낙농진흥회에 모든 유업체나 낙농가가 참여하게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법에 의하면 유업체나 낙농가의 진흥회 참여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많은 유업체나 낙농가가 외면하는 낙진법시행은 반신불수일수 밖에 없으며 참다운 낙농 진흥책이 되지

못한다.

유업체나 낙농가의 진흥회 참여를 유인하는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새로운 제도나 틀이 시행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그러나 빈사 상태의 한국낙농업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어떤 시행착오라도 겪게 된다면 우리 낙농은 진흥이 아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시행까지 1년 수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연구와 도상연습을 통해 낙농업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전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쟁 원칙 아래서 기업(유업체)의 관심은 한국낙농의 발전이나 우유 자급을 향상에 있지 않고 오직 기업 이익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외면하고 값싼 수입유제품으로 시유시장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자행된다면 그 결과는 가공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원유검사의 공영화는 개정 낙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의 하나다. 객관성 있는 검사가 보장되어야 낙농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무기력한 진흥회가 검사를 집유 주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는 검사공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진흥회에서의 원유대 결정은 자칫 낙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유업체의 논리만 대변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흥회의 구성을 보면 명약관화한 일이다.

유가 결정기구에 생산자 농민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합리적이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유가 결정제도가

심도있게 연구도입되어야 한다.

6. 한국 낙농발전에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계절적 원유 수급의 불안정이다.

그나마 기업들이 책임지던 원유 수급의 책임을 아무런 재정적 기반도 없는 진흥회가 전국 우유수급을 책임질 때 비수기 체화되는 원유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의 원유수급 안정기금이라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7. 최저 생산비도 보장 안되는 현행 원유대는 상당부분 과도한 유통비용 때문이다.

과다한 물류비, 고임금 등등은 차치하고라도 판매확장 한담시고 냉장고 사주고 막대한 입점비 주고 천문학적 액수인 TV광고 때리고…….

이 모두가 생산자의 고통을 빠

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지출금액은 줄잡아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다.

냉장고, 입점비, 광고 등을 없애고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는 공동홍보를 실시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상의 지적들이 실행되고 시정되어야 10여년 이상 끌어 천신만고 끝에 탄생시킨 개정 낙진법이 본래의 목적인 낙농진흥과 낙농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명실상부한 획기적인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실행전 남은 짧은기간 착실한 준비를 하여 착오없는 낙진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될 것이다. ☺



이 종 준  
본회 부회장

## 소명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새로운 법인으로 구성될 진흥회는 기구의 구성과 구성원의 인선 작업은 물론 집유조합의 지정과 원유의 구매·공급계약 및 가격과 수급계획, 소비홍보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단체와의 이해관계로 많은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낙농산업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사심없는 업무처리로 국내 낙농산업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 땅에 낙농부국을 건설하여 국민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당시 지도자의 뜻에 따라 30년전에(1967년도) "낙농진흥법"은 제정되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 국

가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올림픽을 치루는 자랑스런 국가가 되었다.

이 기간동안 낙농산업 또한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였으나 법률제정 초기에 미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유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되는 등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10년전부터 민간단체가 노력하였고, 7년전부터는(1990년5월) 정부부처(당시 농림수산부)가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